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93

발의연월일: 2020. 10. 21.

발 의 자: 한병도 · 이수진 · 이해식

김승원 · 정일영 · 이용빈

박상혁 · 진선미 · 윤관석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 취득세를 75%에서 50%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75%에서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도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이 COVID-19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예방의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

이 면제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	감면)
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	
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	1
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	
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u>2020년 12월 31일</u>	2022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 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 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	λ]-		7)	I \					
<	~	4	,	ᄭ	ر ا	>				
,		,		•	'					

3
<u>취득세를,</u> 과세기준
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